

의안번호	제595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5
----------	-----

제출연월일 : 2024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근거 법령개정>

- (에너지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7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

<부서변경>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산단과리과 → 투자유치과

<신규 위임사무>

- (축수산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11건
- (교통철도과)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선정기준,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의 변경

3. 의안전문: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6.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에너지과란의 제4호의 근거법령란 중 “전기사업법 제71조”를 “전기사업법 제7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산단관리과란의 제4호를 삭제하고, 산단관리과란 앞에 투자유치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유치과	1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	----------------------------------	--------------------

별표 1의 축수산과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마.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바. 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 사.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아. 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자.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차.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카. 과태료 부과·징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	---	--	---

별표 1의 교통철도과란의 제1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선정기준,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의 변경, 지정취소,사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이전) 공포 2020. 2. 18. / 시행 2021. 1. 1.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현행) 공포 2022. 12. 27. / 시행 2023. 6. 8.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신설) 공포 2020. 3. 31. / 시행 2021. 4. 1.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축수산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营业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營業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교통철도과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관청과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대행자의 변경신고) 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
2.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改名)되거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
4.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